



일본에서의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운동의 발전

와타나베, 아키오

(Citation)

대학교육발전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10-16

(Issue Date)

2013-02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Version of Record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1726>



일본에서의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 운동의 발전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대학교 교수, 일본대학평가학회 사무국장

우리「대학 평가 학회」(日本)란

- 2004년 4월 ~ 국립 대학교 법인화 & 대학 평가의 법적 의무를 가짐
- 그 직전인 2004년 3월 28일에 설립 (교토)
- 목적: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준수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점에서 대학교 평가의 방법을 검토함
- 학생·청년의 「권리 보장」 & 「발달 보장」
→ 국제인권A규약 13조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착목

「권리 보장」규범의 해명

【법치 국가에 있어서「권리 보장」운동의 논거】

①헌법 규범 = 일본헌법

②국제 조약 = 국제인권 규약, 아동 권리 조약

③a: 법률 중 기본법 = 교육기본법

③b: 법률 중 일반법 = 학교 교육법 등등

↓

「권리 보장」에 교육행정과 대학(법인) 경영을
방향 짓는 「규범」「윤리」의 해명을 중시

①일본 헌법 1947년 시행

제14조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보호하는 자녀가 보통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교육은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

③a: 교육기본법

1947년 시행 / 2006년 개정

제4 조

- 1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그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인권,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의해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에 없는 「경제적 지위 economic position」를 추가적으로 기록
- 3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수학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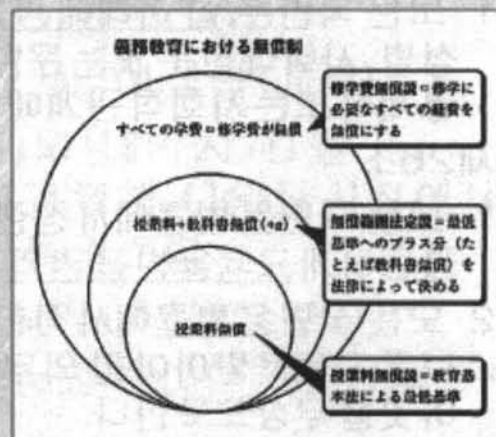
제5 조

- 4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에서 설치하는 학교의 경우, 의무 교육에 관해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5

「무상」「장학 조치」의 확충 운동 수학비 무상을 향한 법정 범위 확대

- 의무 교육 조치 「수업료 불징수」(사립을 제외한) 만으로 스타트
- 1963년 = 의무 교육 학교에 「교과서」 무상 지급(사립을 포함)
- 1956년 = 저소득 가정 아동의 취학 장려 (학생 용품비·통학비·취학 여행비)
- 그외 생활 보호법에 의한 교육 무양, 지자체에 의한 취학 원조와 급식비 면제.



5

2학기 중등 교육 = 고등 단계 운동

- 의무 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는 「유상」

↓
이러한 「논리」를 뒤엎기 위해서는

① 일본 헌법 & ③a: 교육 기본법 어디에도 「고등학교 = 유상」
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

② 아동 권리 조약 = UN 1989년 채택 / 일본 1994년 비준 발효
제 28조

1 (b) 여러 형태의 중등 교육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을 포함)
의 발전을 장려하며, 모든 아동에 대해 이러한 중등 교육이
이용 가능하고, 또한 이것을 이용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무상 교육 도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재정적 원조 제공과 같이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내건 정권 탄생 2009년

2006년 교육 기본법
개정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격차」 문제가
초점화 = 국민의
관심사로



2010년~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실현

- 1) 연간 118,800엔(월 9,900엔)을 국가가 지원/ 가정 상황에 따른 가산 있음/ 약 360만명 대상, 총액 약 4천억엔
 - 2) 국공립+ 사립, 전수학교·전문학교를 포함
 - 3) 「논리」의 전환
 - 「수익자 부담」에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환
 - 문부 과학성 「사회 전체가 당신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이유 ① 진학률 98%, 효과가 넓게 사회 전체에 환원.
 ②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고교생 등을 지원.
 ③ 국제 규약에도 점진적 무상화를 규정.
- 4) 과제 = 수업료 부분 뿐, 다른 교육비 부담은 그대로 남음.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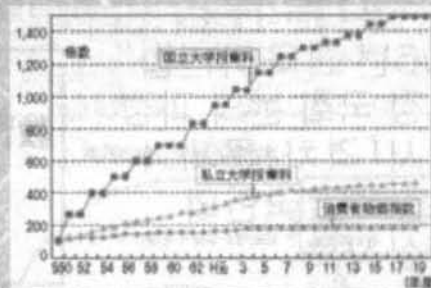
문부 과학 백서 2009년 판 대학 수업료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수업료 추이

○ 학회 이상(異常)한 고등

국립 대학 수업료, 사립 대학 수업료 평균 금액,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1975년 시점을 100으로 했을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30년간 약 2배 늘어난 것에 비해, 대학 수업료는 이를 크게 뛰어넘는 국립 대학 약 15배, 사립 대학 에서는 약 4배

○ 수업료 현황

국립 535,800엔/년
 사립 851,621엔/년



11

고등 교육 = 대학 단계 운동

- 대학 평가 학회 · 초대 공동 대표
타나카 마사토(TANAKA Masato) 2005년
유서 『일본의 고학비를 어떻게 하니』



- 대학 평가 학회 특별 위원회
를 시작으로, 국민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확충을
향해 무상 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 전국 대학원생
협의회 / 전일본학생 자치 총연합 / 일본 고등학교
교직원 조합 / 국고 조성에 관한 전국 사립 대학
교수 모임 연합 등

10

국제 인권 A규약 13조 유보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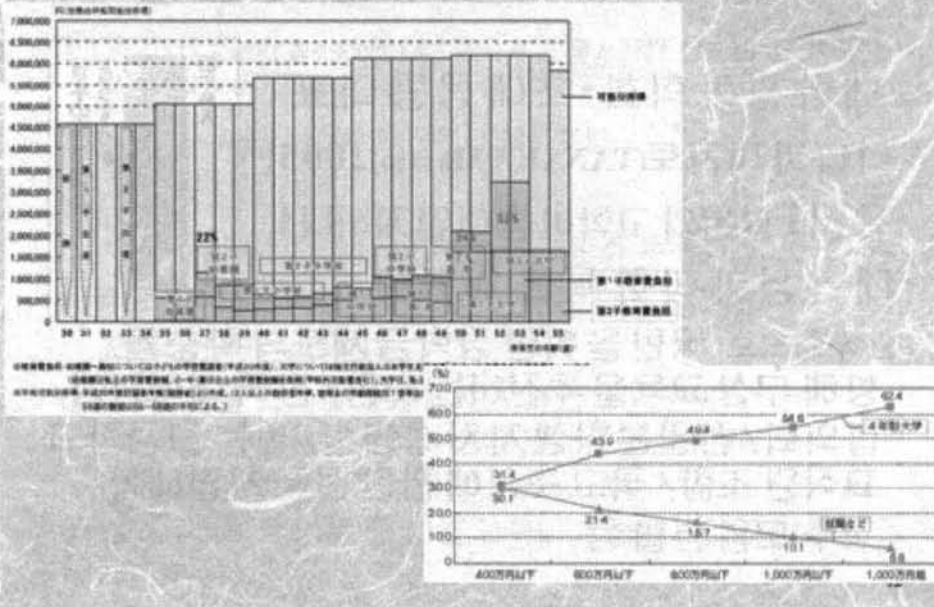
- 2012년 9월 11일 = 마침내 일본 정부가 유보 철회
제 13조 2항

(c) 고등 교육은, 여러 적당한 방법에 의거하여,
특히 무상 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의한, 능력에
따른 모든 이에 대해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 받는
것으로 한다.

(c)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15

문부 과학 백서 2009년 판
가정 소득과 교육비 / 부모의 수입과 아이들진로



→ 국제 조약 = 국제 인권 A규약에 의한
고등교육의「점진적 무상화」규범 추가

- 한층「권리 보장 = 무상화」운동의 논거 = 주춧돌로
- 한미일 연대로 인한 연구와 운동의 발전으로
- 일본에서도 우선은 ①「수업료 반액화」/
②「고등교육 예산GDP비율1.2%의 증액」으로
- 대안①: 국립 대학 수업료 반액 267,900엔을
일률적으로 보조한다 가정하면, 「약 7,700억엔」.
전문학교생을 포함하면, 추가로 「약 1,550억엔」을
필요로 한다. 합쳐서 약 0.9조엔, 즉 2012년도 일반
회계 국가 예산 90조엔의 1% 추가로 실현.
- 대안②: 일본 GDP 500조엔의 1.2% = 6조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に係る第2回国際シンポジウム(韓国ソウル)2013.02.22.

日本における 「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運動の進展

渡部 昭男(WATANABE Akio)
神戸大学大学院・教授
大学評価学会・事務局長
「国際人権A規約13条問題特別委員会」担当理事

1

私たち「大学評価学会」(日本)とは

- 2004年4月～国立大学の法人化&大学評価の法的義務づけ
 - その直前の2004年3月28日に設立(於:京都)
 - 目的:「学問の自由」と「大学の自治」を守り発展させるために、多様な視点から大学評価のあり方を検討する。
 - 学生・青年の「権利保障」&「発達保障」
- 国際人権A規約13条「無償教育の漸進的導入」に着目

2

「権利保障」規範の解明

【法治国家に於ける「権利保障」運動の論拠】

- ①憲法規範＝日本国憲法
- ②国際条約＝国際人権規約、児童権利条約
- ③a: 法律の中の基本法＝教育基本法
- ③b: 法律の中の一般法＝学校教育法 等々



「権利保障」へと文教行政や大学(法人)経営を
方向づける「規範」「論理」の解明を重視

3

①日本国憲法1947年施行

第14条

- 1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っ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第26条

- 1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て、ひと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 2 すべて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保護する子女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ふ。
義務教育は、これを無償とする。

4

③a: 教育基本法 1947年施行 / 2006年改定

第4条

- 1 すべて国民は、ひとしく、その能力に応じた教育を受ける機会を与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経済的地位又は門地によって、教育上差別されない。→憲法にない「経済的地位 economic position」を追記
- 3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能力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経済的理由によって修学が困難な者に対して、奨学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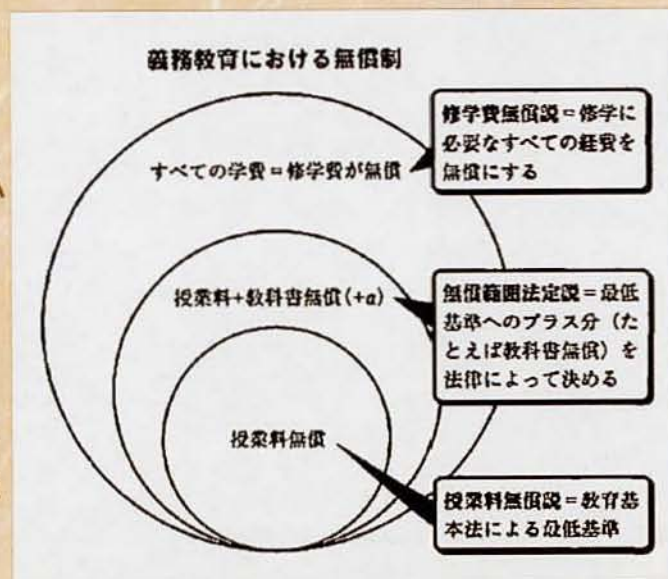
第5条

- 4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設置する学校における義務教育については、授業料を徴収しない。

5

「無償」「奨学の措置」の拡充運動 修学費無償に向けて法定範囲を拡大

- 義務教育でさえ「授業料不徴収」(私立を除く)のみからスタート
- 1963年 = 義務教育諸学校の「教科書」無償給付(私立を含む)
- 1956年 = 困窮家庭児への就学奨励(学用品費・通学費・就学旅行費)
- 他に、生活保護法による教育扶助、自治体による就学援助や給食費の減免



6

後期中等教育＝高校段階の運動

- 義務教育でない高校段階は「有償」



この「論理」を覆すために

- ①日本国憲法 & ③a: 教育基本法のどこにも「高校＝有償」とは書いていない
- ②児童権利条約＝国連1989年採択／日本1994年批准発効第28条
1 (b) 種々の形態の中等教育（一般教育及び職業教育を含む。）の発展を奨励し、すべての児童に対し、これらの中等教育が利用可能であり、かつ、これらを利用する機会が与えられるものとし、例えば、無償教育の導入、必要な場合における財政的援助の提供のような適当な措置をとる。

高校授業料無償化を掲げた政権誕生 2009年

2006年の教育基本法改定の国会論議の過程で「格差」問題が焦点化＝国民の関心事に



2010年～高校授業料の無償化実現

- 1) 年額118,800円(月9,900円)を国が支援／家庭状況により加算あり／約360万人対象、総額約4千億円
- 2) 国公立+私立、専修学校・専門学校を含む
- 3) 「論理」の転換
 - ・「受益者負担」から「社会全体の負担」への転換
 - ・文部科学省「社会全体であなたの学びを支えます」理由①進学率98%、効果が広く社会全体に還元。
 - ②家庭状況を問わず、全ての高校生等を支援。
 - ③国際規約においても漸進的無償化を規定。
- 4) 課題＝授業料部分のみであり、他の教育費負担は残る。

9

高等教育＝大学段階の運動

- 大学評価学会・初代共同代表
田中昌人(TANAKA Masato)2005年
遺著『日本の高学費をどうするか』
- 大学評価学会特別委員会



をはじめ、国民のための奨学金制度の拡充をめざし無償教育をすすめる会／全国大学院生協議会／全日本学生自治会総連合／日本高等学校教職員組合／国庫助成に関する全国私立大学教授会連合など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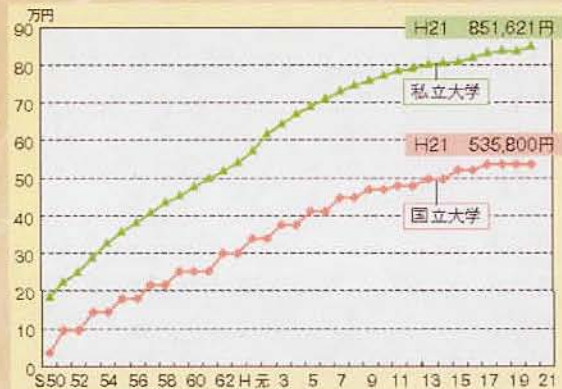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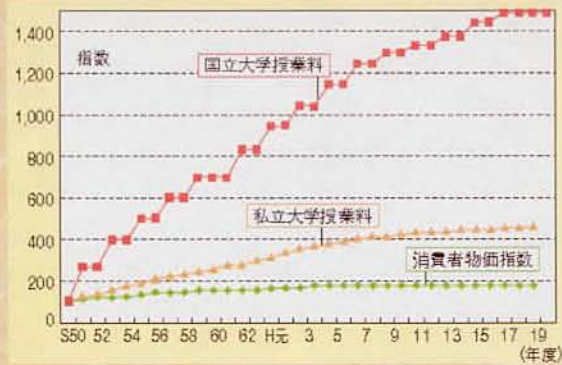
文部科学白書2009年版 (p.13)
 大学授業料と消費者物価指数の推移 / 授業料の推移

○学費の異常な高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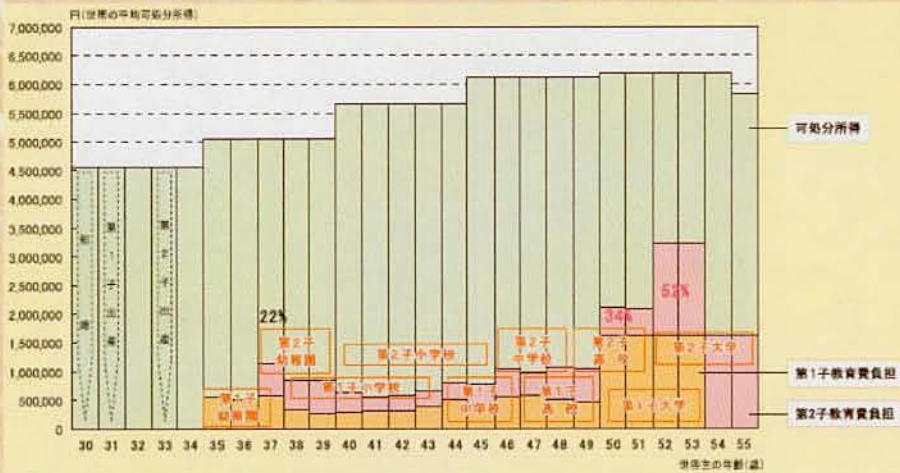
国立大学の授業料, 私立大学の授業料平均額, 消費者物価指数のそれぞれを, 1975年時点を100とした場合, 消費者物価指数はこの30年間で約2倍の伸びに留まるのに対して, 大学の授業料はこれを大きく上回り, 国立大学で約15倍, 私立大学で約4倍

○授業料の現状

国立535,800円/年
 私立851,621円/年



文部科学白書2009年版 (p.8/p.14)
 家庭の所得と教育費 / 親の収入と子供の進路



※教育費負担 幼稚園～高校については子どもの学習費調査(平成20年度), 大学については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新制度は私立の学習費総額, 小・中・高は公立の学習費総額を算出(学給外活動費含む), 大学は、私立と平均可能な所得、平成20年度調査年報(総務省)より作成。(2人以上の子どもを世帯、世帯主の年齢層別別1世帯当たり55歳の数は55-59歳の平均による。)



国際人権A規約13条の留保撤回

- 2012年9月11日＝日本政府はついに留保撤回第13条2項
 - (c) 高等教育は、すべての適当な方法により、特に、無償教育の漸進的な導入により、能力に応じ、すべての者に対して均等に機会が与えられるものとする
- (c)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13

→国際条約＝国際人権A規約による 高等教育の「漸進的無償化」規範の追加

- 更なる「権利保障＝無償化」運動の論拠＝礎に
- 韓日米の連帯による研究と運動の進展へ
- 日本でも、まずは①「授業料の半額化」／②「高等教育予算GDP比率1.2%への増額」へ
- 代案①：国立大学授業料の半額267,900円を一律に補助すると仮定すると、「約7,700億円」。専門学校生を含めると、さらに「約1,550億円」を要する。合わせて約0.9兆円、すなわち2012年度の一般会計国家予算90兆円の1%の追加で実現。
- 代案②：日本のGDP500兆円の1.2%＝6兆円。

【ご静聴、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14